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. 8. 31 선고 2022가단667 판결 [전세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(무변론 판결)

판사 김새미

별지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20. 01. 29. 피고소유의 아래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목적물 : 충청북도 제천시 C 4층 D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

1층 12.42㎡ 2층 147.56㎡

3층 147.56㎡ 4층 145.46㎡

임차보증금 : 금 55,000,000원

임대차기간 : 2020. 02. 10.부터 2022. 02. 09.까지 2년간

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중 계약금 55,000,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2020. 02. 10.부터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.

3. 그러나 위 피고는 2022. 02. 09. 전세종속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까지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.
4.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20. 01. 29. 전세권설정을 한 상태입니다.
5.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%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